

심 사 보 고 서

2019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

2019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6
----------	----

2018. 10. 24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8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0월 12일

-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: 1,264백만원(도비)

-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 등 충북의 문화 예술 역량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의 운영비
- 충북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(급여, 제수당 등), 경비(복리 후생비, 지급수수료 등), 성과급 편성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호식)

- 충북문화재단은 충청북도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도민 문화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30일에 설립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음.
- 도민의 문화향유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출연금 산출내역을 보면, 2018년도 861,349천원에서 2019년도에는 1,264,421천원으로 403,072천원이 증액되었음.
- 2018년도에 비해 인력이 증원(10명→18명)된 이유로 출연금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나, 인력증원의 적정성 및 향후 인력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. 아울러 경영평가 결과가 2018년도에는 “A”등급이었으나 2019년에는 “B”등급으로 하락된 원인과 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2019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」

의안번호	제46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10월 일 (제368회)

2019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8년 10월 2일

2019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

의안번호	제 46 호
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10. 2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: 1,264백만원(도비)
- 도민의 문화향유 기획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 등 충북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의 내실있는 운영
- 충북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(급여, 제수당 등), 경비(복리후생비, 지급수수료 등), 성과급 편성

3. 제안자 의견

- 충북문화재단의 내실있는 운영과 문화예술인(단체)들의 안정적인 창작기반 마련 및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출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요망함

1 총북문화재단 출자·출연 계획안

사업명	총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	출자·출연금	1,264,421천원
출자·출연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명 : (재)총북문화재단 ○ 대표 : 이시중(이사장) ○ 소재지 :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94번길 7 		
사업내용			
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개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- 문화·예술·관광진흥을 위한 정책개발·자문 및 교육·연구 사업 -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등 ○ 사업비 산출근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건비 780,242천원, 경비 403,980천원, 성과급 80,199천원 		
출자·출연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예술인(단체)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설립된 총북문화재단의 내실있는 운영 ○ 총북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등 편성 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문화진흥법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0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)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○ 총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9조(출연금 등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,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		
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획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 등 충북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총북문화재단의 내실있는 운영에 필요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년대비 증감액은 인건비 (공무원 임금인상률 1.8% 반영) 및 재단홍보비,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비, 성과급(전년도까지 미반영) 등 신규 및 증액분임 		

주관부서	문화예술산업과 예술팀	소속부서장	팀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이배훈	김학규	류석열	220-3822

1-① 관리부서 검토결과서

1 2018년 경영평가(2017년 실적) 결과 및 지적사항

○ 경영평가 결과 : B등급(79.81점)

- 기존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매우 미흡하여 실효성이 없음(재수립 필요)
- 민선 7기 4년간의 수요조사를 통한 전략과제와 실행과제 재설정, 중장기 인력 계획 및 재정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함
- 부서별 업무량 산정을 통한 업무분장이 미흡하고, 자체수행한 직무분석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미흡함
- 기관 내부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할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시급한 과제임
- 직원들로부터 교육수요조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역량별 교육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
- 역량모델링이 필요하며 도출된 역량별로 단계별(기초, 중급, 고급)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개인별 경력 관리 계획 수립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직원들 역량 강화를 추진하여야 함
- '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 전개'의 경우 상주단체와 공연장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고 전문 모니터링이 절실히 필요한
- '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'은 멘토·멘티의 다양성이 아쉬움
- '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'는 전문 모니터링들의 주도하에 현장 모니터링을 한 후 많은 회의와 소통을 하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
- '문화예술교육 특성화'는 평가의 객관성, 청주 중심인 것이 아쉬움. 타지역으로 좀 더 유도하여 제천, 단양 등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여야 함
- '도민 문화예술 활동지원'은 전문예술가들이 증가하는데 목적보다 전문성을 좀 더 중요시 하여 공연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
- '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성과확산 노력'은 예산을 늘려 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 교육에 적극 지원해야함

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문화예술인(단체)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출연금 지원 타당함
- 전년대비 증감액은 인건비 증액으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('18.06월) 및 단계별 인력증원 계획에 따라 2019년 정원 20명으로 계상

③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7년 결산액	2018년 예산액(최종) (C)	2019년 예산안			
	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(B-C)
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	668	861	1,264	1,264	-	403

【연도별 출연 내역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출연금	3,717	348	464	601	699	744	861

④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(체크항목)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	비고
여	여	부	여	여	여	여	

1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문화예술과		출연	1,264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
- 충북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편성

□ 출자·출연개요

- 사업위치 : 충북문화재단
- 설립근거 : 민법 제32조,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
- 설립자산 : 182억원
- 주요기능 :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활성화, 교육·연구 등

□ 산출기초

-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내역 별첨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출연금	3,717	348	464	601	699	744	861

□ 기대효과

- 충북문화재단 사무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내실 있는 운영
-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 등 우리 도의 문화 예술 역량 증진을 위해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의 운영 불가

2019 충북문화재단 운영비(도 출연금)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구 분	산 출 내 역	2019년	2018년	증△감	비고
총 계		1,264,421	861,349	403,072	
인건비	소 계	780,242	463,639	316,603	
	급 여	501,180	227,428	273,752	
	○ 기본급				임금 1.8% 인상
	- 가급 3,764천원×1명×12개월 = 45,168	37,663	7,505	출근장려수당	
	- 다급 3,000천원×3명×12개월 = 108,000	86,060	21,940	합산	
	- 라급 2,308천원×3명×12개월 = 83,088	22,839	60,249	*인력 증원	
	- 마급 2,007천원×11명×12개월 = 264,924	80,866	184,058		
	계	217,396	195,211	22,185	
	○ 급식비				
	- 130천원×18명×12개월 = 28,080	15,600	12,480		
	○ 교통비				
	- 200천원×18명×12개월 = 43,200	24,000	19,200		
	○ 출근장려수당				
	- 기본급으로 통합 = 0	66,720	△66,720		
○ 상여금					
- 500천원×18명×3회 = 27,000	15,000	12,000	인력 증원		
○ 시간외근무수당					
- 16,040원×17명×21시간×12개월 = 68,716	33,091	35,625			
○ 공무원 파견수당					
- 400천원×1명×12개월 = 4,800	4,800	-			
○ 대표이사 활동보조비					
- 2,000천원×1명×12개월 = 24,000	24,000	-			
○ 가족수당					
- 100천원×18명×12개월 = 21,600	12,000	9,600			
기간제근로자보수	계	6,000	6,000	-	
○ 기간제근로자 보수					
- 2,000천원×3명×1개월 = 6,000	6,000	-			
퇴직급 여	계	55,666	35,000	20,666	
○ 퇴직연금 부담금	= 55,666	35,000	20,666		
경비	소 계	403,980	355,110	48,870	
	복리후생비	90,320	63,840	26,480	
	○ 직원 선택적 복지포인트				
	- 500천원×18명×1회 = 9,000	8,500	500	인력 증원	
	○ 4대보험 등 각종 기관부담금				4대 보험료 인상
	-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= 60,000	42,500	17,500		
	○ 특근매식비				
	- 8천원×17명×10회×12개월 = 16,320	8,640	7,680		
	○ 직원 단체보험 부담금	= 5,000	4,200	800	
	계	63,200	48,864	14,336	
여비					
○ 국내여비 = 43,200	28,864	14,336	인력 증원		
○ 국외여비 = 20,000	20,000	-			
공공요금및제세	계	11,100	11,100	-	
○ 우편물 발송대 = 1,200	1,200	-			
○ 전화, 인터넷 등 통신료 = 9,400	9,400	-			
○ 각종 제세 공과금 = 500	500	-			
수도	계	10,000	23,600	△13,600	

구분	산출내역	2019년	2018년	증△감	비고
광열비	○ 수도, 전기 등 연료대	= 10,000	23,600	△13,600	
	계	19,500	14,000	5,500	
소모품비	○ 각종 소모품비	= 15,000	10,000	5,000	물가상승률 반영
	○ 전산 S/W구입비	= 4,500	4,000	500	
계		8,500	6,500	2,000	
도서인쇄비	○ 신문 구독료	= 1,500	1,500	-	물가상승률 반영
	○ 각종 인쇄비	= 7,000	5,000	2,000	
계		36,400	33,126	3,274	
지급임차료	○ 차량 임차료	= 12,000	12,000	-	물가상승률 반영
	○ 사무실 임차료	= 13,000	12,005	995	
	○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	= 2,400	2,121	279	
	○ 예산회계 및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임차료	= 7,200	7,000	200	
	○ 전산장비 임차료	= 1,800	-	1,800	
	계	7,000	6,300	700	
차량유지비	○ 차량 유류대 및 차량관리	= 6,500	5,800	700	유류비 상승
	○ 고속도로 통행료	= 500	500	-	
계		52,300	51,220	1,080	
지급수수료	○ 회계감사 수수료 및 회계컨설팅	= 7,500	7,500	-	물가상승률 반영
	○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 사용료	= 2,400	1,920	480	
	○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료	= 22,200	22,200	-	
	○ 홈페이지 유지보수	= 7,200	6,600	600	
	○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	= 3,000	3,000	-	
	○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	= 10,000	10,000	-	
계		28,800	28,800	-	
업무추진비	○ 기관운영 업무추진비				
	- 2,000천원×12월	= 24,000	24,000	-	
	○ 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		
- 400천원×12월	= 4,800	4,800	-		
계		5,960	3,960	2,000	
관서업무비	○ 정원가산 업무추진비				
	- 80천원×22명	= 1,760	960	800	정원 증가
	○ 부서운영 업무추진비				
- 350천원×12월	= 4,200	3,000	1,200		
계		9,900	3,300	6,600	
교육훈련비	○ 각종 교육훈련 경비				
	- 450천원×22명×1회	= 9,900	3,300	6,600	정원 증가
행사홍보비	계	40,000	20,000	20,000	
○ 재단홍보비 등	= 40,000	20,000	20,000		
회의운영비	계	21,000	20,500	500	
○ 이사회 등 참석수당	= 6,000	10,500	△4,500		
○ 각종 위원회 등 심의수당	= 15,000	10,000	5,000		
연구개발비	계	-	20,000	△20,000	
○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	= -	-	20,000	△20,000	
성과급	소계	80,199	42,600	37,599	
	○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				
- 2,814천원×19명×150%	= 80,199	42,600	37,599	정규직 증원	